

## 電子商去來契約의 成立에 관한 研究

이기희  
한국방송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을 창출하였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는 법적·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한 거래관련당사자들간의 분쟁의 야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계약서 발행가능한 법적·제도적 문제 중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보고 이를 토대로 거래당사자들간에 발행가능한 실무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 I. 序論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보급은 정보전달속도의 가속화를 통하여 인간의 경제활동영역을 가상세계인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까지 확대시키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EC)라는 새로운 상거래형태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소비자) 그리고 개인(매수인)과 개인(매도인)간의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의 전자상거래 형태 및 응용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

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법적·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한 거래관련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야기하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주도한 선진국에서조차도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아직 CALS나 EC와 같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법이론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구나 실제 응용사례의 소개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기

본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고, 그 유형과 활용실태를 살펴 본 후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다루기에 앞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입법례를 검토한 후, 전자상거래계약시 발생가능한 법적·제도적 문제 중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 당사자간에 발생가능한 분쟁의 해결방안의 모색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 문헌과 관련법규 및 거래관행을 연구의 도구로 삼아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 II. 電子商去來의 意義 및 現況

### 2.1 電子商去來의 概念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은 그 내포하는 의미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기존의 개념들을 정의한 것들을 살펴보면 “전자공간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sup>1)</sup>,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행위의 전과정이 전자적 수단과 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sup>2)</sup> 또는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혹은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sup>3)</sup>,

”전자기기나 기술을 통하여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환 등의 거래가 수행되는 것”<sup>4)</sup> 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한편 1996년 6월 유엔국제거래법 위원회(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가 채택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al Law on Electronic Commerce)’에서는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정보를 통한 상거래 행위”를 전자상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sup>

이처럼 다양한 정의 속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살펴본다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개인과 상인간의 거래행위’라는 점인데 여기에서 전자상거래가 ‘전자공간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상행위’라고 정의되어 질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는 일반적 상거래 형태에서 사용자에게 통신, 데이터 관리 및 보안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간의 상품과 용역을 교환하는 진보된 형태의 상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표 1 참조) 현재 전자상거래는 전용망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점차 발전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종전에는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일반 소비재를 판매하는 가상점포(Virtual

- 1) 홍준형,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 EDI 및 전자거래의 개념과 기능”, 「전자거래 및 EDI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연구」, 한국전산원, 1996, p.39.
- 2)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외환은행조사(314호), 1996, p.4.
- 3) 한국전산원, “CALS/EC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96, pp.12-13.
- 4) XIWT Cross-Industry Working Team, Electronic Commerce in the NII, 1995, [http://www.wixt.org/documents/EComm\\_doc/ECommPaper.html](http://www.wixt.org/documents/EComm_doc/ECommPaper.html).
- 5) This Law applies to any kind of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used in the context of commercial activities.(모델법 제1장 제1조)

&lt;표 1&gt;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와의 비교

구 분	전 자 상 거 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
유 통 채 널	기업 ↔ 소비자	기업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거래대상지역	전세계(global marketing)	일부지역(closed clubs)
거래시간	24시간	제약된 영업시간
고객수요 파악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 재입력이 필요 없는 digital data	영업사원이 획득 정보 재입력 필요
마케팅 활동	쌍방향 통신을 통한 1대1 interactive marketing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일방적인 마케팅
고객 대응	needs를 신속히 포착 즉시 대응	needs포착이 어렵고 대응 지연
판매거점	cyberspace	판매공간 필요

[자료] 통산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 2.

Store)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도매상과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전체를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적용분야도 전자쇼핑몰(Electronic Shopping Mall)<sup>6)</sup> 중심에서 최근에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 분야에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되고 한정된 거래상대방과 표준화된 데이터를 비싼 통신비용을 지불해 가며 교환해 왔던 전통적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7)</sup>

### 3.2 電子商去來의 範圍

#### 3.2.1 電子文書 交換(EDI)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전자식 문서교환 또는 전자식 자료교환이 된다. 통상 Data를 정보 또는 자료라고 번역하지만 무역에서는 문서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므로 EDI를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그러나 굳이 번역해서 쓸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EDI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EDI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문서를 구조화한 합의된 표준양식을 이용하여 처리가능한 문서 또는 자료를 전자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DI는 전자메일(Electronic Mail : E-mail)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data base)에서 제공해 주는 수많은 정보(Information)도 아니다. EDI의 기본개념은 데이터의 축적과 전송이라는 점에서 E-mail과 유사하지만 E-mail이 통상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통신(person to person communication)임에

6) 전자쇼핑몰(Electronic Shopping Mall)은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 Ellen Breznak, "Internet Commerce : Who For Art Thou?", EC World, April, 1997, p. 6.

&lt;표 2&gt; CALS의 개념 변천과정

변천단계	설계, 제조	조달	물품, 소모품의 보급·교환	상거래, 물류, 자금 결제	개념
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1985)			●		<컴퓨터에 의한 병참업무의 지원> 무기메뉴얼의 디지털화, 군의 정보화, 병참업무 지원 등 군 내부의 업무에 중점
Computer-aided Aquisition and Logistics Support(1988)		●	●		<컴퓨터에 의한 조달 및 병참업무의 지원> 군 내부 뿐만 아니라 무기 및 각종 물자의 조달로까지 확대
Computer A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1993)	●	●	●		<지속적 조달과 라이프 사이클 지원> 제조업분야의 산업정보화의 전략으로서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
Commerce At Light Speed(1994)	●	●	●	●	<광속의 상거래> 통신에 의한 정보전달이 주관점 일반상거래의 전자화 개념

[자료] 시스템공학연구소 CALS연구실(<http://aerosti.snu.ac.kr/~cals/saengsan/c.htm>),

노형진, "CALS의 세계", 「상의주보」, 제1242호, 1995. 8. pp.24-27. 참조.

반해 EDI는 기업내 또는 기업간의 컴퓨터 대 컴퓨터통신(computer to computer communication)으로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서를 교환한다는 점이 다르다.

EDI는 통상 기업내부(그들의 대리점 또는 자회사 포함)간에 이용될 수도 있으나 기업 대 기업간에 또는 기업과 유관기관간에 수행되는 개념으로 보는 추세이다. 즉 전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신한 회사가 이것을 보고 송신한 회사의 문서나 정보 등을 이해하고 그러한 정보에 대응하여 행동

할 수 있게 해줄 때 EDI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간에 이용되는 EDI는 기업들이 종이서류 없는 거래(documentless trade or paperless trade)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서 흔히 전자식 거래(Electronic Trading)라고 불리기도 한다.<sup>8)</sup>

이러한 EDI는 현재까지 인터넷과는 무관하게 주로 기업간의 상거래를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 EDI가 지난 단점<sup>9)</sup>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VAN(Value Added Network)<sup>10)</sup>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한 저렴한 EDI체제가 등장

8) 한주섭·이용근, 「무역관습론」, 동성사, 1993, pp.252-253.

9) VAN사업자를 통한 EDI거래는 유지비가 비싸고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다.

Pushpendra Mohta, "The Internet : Where Businesses Do Business", Ec World, September, 1997, p.20

10)VAN은 임차한 통신회선 설비에 컴퓨터를 접속, 다양한 용용서비스와 통신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네트워크를 말한다.

&lt;표 3&gt; 사이버무역의 특징

<사이버무역의 특징>	
<b>1) 국내·국외의 무차별</b>	인터넷의 기본속성상 거래 상대방과의 접촉에 있어서 상대방이 같은 국가 내에 있는가 아닌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를 시작하는 행위는 국내 거래의 일부, 혹은 국제간 무역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는 단어에는 국내, 국제간 상거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b>2) 소프트제품에서 하드제품으로의 확산</b>	전자상거래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은 주로 소프트제품군(soft goods)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지털로 저장한 서적, 신문, 음악, 사진 등이다. 이러한 제품군은 무역절차의 계약단계에서부터 상품의 전달까지 전과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상품의 이동이 필요한 전통적 상품에서 소요되는 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하드제품에 대해서도 교환되는 정보(예: 상품정보, 가격정보, 거래절차 정보, 상대방 국가나 기업의 정보 등)가 복잡하고 많을수록 인터넷의 활용효과는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이버무역은 소프트제품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하드 제품군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b>3) 정보의 흐름과 물류의 분리</b>	국제간의 거래에는 제조업자, 무역업자, 운송업자, 은행, 관세청, 항만청, 보험회사 등의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며, 이들이 주고 받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역정보의 흐름과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정보의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 기존의 무역 과정에서는 정보 교환과 흐름의 지체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상품의 이동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 흐름의 지체가 해소됨으로써 물류가 정보흐름에 귀속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b>4) 중간상인의 역할변화</b>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무역과정에서는 기존의 무역 중개상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기존의 무역 중개상은 폭넓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 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자본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였지만 사이버무역에서의 무역중개상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역 정보를 수집, 접속, 처리, 분배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중요하다. 예컨데, 소비자가 사려고 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자와 상품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제공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그것이다.*
<b>5) 기업규모의 중요성 감소</b>	기존에는 국제 상품정보와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국제 무역에서 나라마다 요구되는 제도와 절차의 차이에 대한 정보 부족, 국제무역 절차와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기업에 의존하여 하청관계를 유지하였던 중소기업이 사이버무역환경에서는 하청관계를 탈피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사이버무역환경에서는 기존의 대기업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정보와 국외거점을 통해 얻을 수 있던 이점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규모가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 장기적으로는 지능형 에이전트(agent) 소프트웨어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과 화물 운송과 통관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처리까지 중간상인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 여러나라에서 자재를 조달, 생산, 여러나라로 판매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기동성있게 대처하는 장점이 있다.

[자료] <http://user.chollian.net/~syndrome/sub3.html>(1998) 참조.

하고 있다.<sup>11)</sup>

### 2.2.1 CALS

CALS는 1985년 "컴퓨터에 의한 병참지원(Computer Aided Logistic Support)"에서 출발하여 조달업무, 제품수명주기 관리, 기업통합 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1994년에는 '광속 상거래(Commerce At Light Speed)'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표 2 참조)

초기의 CALS가 종이문서 위주의 정보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에 역점을 두었다면, 최근의 CALS는 기업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스피드화를 통한 글로벌한 정보사회에 대처하려는 전략적 의미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sup>12)</sup>

CALS는 종래와 같은 수치데이터뿐 아니라 설계도, 매뉴얼 등 화상 및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 정보시스템으로서 개발, 설계, 조달에서 보수, 운용까지의 각 국면에서 관련되는 모든 부문과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흡사 하나의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처럼 제휴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통한 코스트삭감을꾀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보인프라 구조이다. CALS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각 기업공정의 통합을 이루어내 국내외 전체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sup>13)</sup>

1994년 이후 CALS가 '광속 상거래(Commerce At Light Speed)'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기존의 응용분야에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한 소액의 자금결제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확대 발전되면서, 이제 CALS/EC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 2.2.3 사이버 비즈니스(Cyber Business)

Cyber Business이란 인터넷에 홈페이지, 가상상점(virtual shopping mall) 등을 개설하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및 판매활동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Cyber Business를 협의의 전자상거래라고 한다.<sup>14)</sup>

현재 전자상거래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는 곳이 사이버쇼핑의 장소인 전자쇼핑몰이다.

전자쇼핑몰이란 가상매장을 인터넷상에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얻고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상품을 배달받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쇼핑몰은 자신의 점포를 별도로 갖지 않는 가상점포로서 생산자와 최종소비자의 중간에 서서 그 매개역할을 맡고 대금차익이나 수수료 또는 광고료를 얻는 경우와 직접적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인터넷 검색시스템인 야후(YaHoo)에 등

11) 데이콤에서는 기존의 EDI서비스를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웹 EDI'를 개발하여 98년 7월 1일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 7. 1

12) 심충건, "손에 잡히는 CALS", 「정보시대」, 1996, p.27.

13) 시스템공학연구소 CALS연구실(<http://aerosti.snu.ac.kr/~cals/saengsan/c.htm>)

14) 이동근, "전자상거래의 국제동향과 정책방향",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확산전략」, 대한상공 회의소, 1997, 10, p.7.

록되어 있는 사이버 쇼핑업체는 6백여개 정도이며 인터넷에 사이버 쇼핑사업으로 개설한 홈페이지만도 약 7만여개에 이르고 있다.<sup>15)</sup>

### 2.3 사이버 貿易

인터넷은 거래 상대방과 물건에 대한 정보를 찾는 도구이며, 거래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 받아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없이 전세계의 수출입 업체, 제조업체,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사이버무역의 주요 수단이 되는 이유는 ①전세계적인 연결성 ②손쉬운 정보탐색 ③손쉬운 정보의 교환 ④저비용 ⑤이용자의 급속한 증가 등의 인터넷의 기본적인 성격 때문이다.<sup>16)</sup>

결국, 인터넷은 사이버무역을 위한 최적의 도구인 셈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몇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표 3 참조)

### 2.4 電子商去來의 國內外 現況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1997년 현재 약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오는 2000년에는 이용자수가 약 4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나,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향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sup>17)</sup>(표 4-1 참조)

한편 보스턴에 있는 Forest 연구소는

2000년의 전세계의 사이버쇼핑 시장규모를 65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4-2)

<표 4-1> 인터넷 이용자증가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구분	'94.12	'95.12	'96.12	'97.12	2000년
한 국	138	366	731	1,634	4,200
전세계	22,170	45,820	94,720	128,810	200,000

[자료]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Network Wizards (<http://www.nw.com/zone/WWW/top.html>)

<표 4-2>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백만달러)

연도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한 국	1,400	6,285	15,004	34,484	61,396
전세계	518	1,188	2,371	3,990	6,570*

\* 조사기관에 따라 최대 8,000억달러까지도 예상하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지는 30년후 전자상 거래가 총 교역의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료] Forest Research, 통산산업부, “전자상거래 세계동향과 우리의 대응”, 1997.7, 통산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 2. 재인용

<표 4-3>거래방식에 따른 시장규모(전세계)

(단위 : 백만달러)

거래방식	94년	2000년	2005년
전통적 방식	5,150,000	8,500,000	12,000,000
전자상거래	인터넷	--	600,000
	총규모	245	1,650,000
			2,950,000

[자료] Killen & Association, 이동근, “전자상거래의

15) 전자신문, 1997. 6. 30

16) <http://user.chollian.net/~syndrome/sub3.html>(1998)

17)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작은 1996년 인터넷에 쇼핑몰(인터넷파크, 롯데인터넷백화점)이 개설된 후부터임. 통산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 2.

국제동향과 정책방향”,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확산 전략」, 대한상공회의소, 1997, 1, p.10. 재인용.

이와 같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두주자인 미국은 그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프로젝트로 94년 4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600만 달러를 투자, 전자상거래 연구를 위한 커머스넷(CommerceNet)<sup>18)</sup>을 설립했다. 이 단체가 새로운 전자지불 방식을 시험하고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1997년 7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sup>19)</sup>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민간기구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10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전신전화(NTT)를 비롯, 64개업체가 참여한 스마트아일랜드컨소시엄(Smart Island Consortium : SIC)<sup>20)</sup>등 민간 주도 전자 상거래 컨소시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선진 7개국(G7)도 초고속

정보통신 10여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구축에 나서고 있다.<sup>21)</sup>

국내에서 전자상거래의 구현형태는 인터넷의 확장에 따른 사이버쇼핑몰 형태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PC통신을 통해 온라인 쇼핑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업체도 서비스 형태를 사이버 쇼핑몰로 개편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주체로는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ICEC : International Center for Electronic Commerce), 미국의 CommerceNet의 국내파트너 자격인 CommerceNet Korea, EDI 표준개발기관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 및 한국 CALS/EC협회·기술협회 및 ELECTROPIA 등이 있다.

ICEC는 종합적인 가상시장인 Metaland를 설립하고 있으며, CommerceNet Korea는 데이콤, 한국통신 등 2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1997년 5월 법인설립을 마치고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씨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와 한국통신 등은 공동으로 코리아사이버페이먼트(KCP: Korea Cyber Payment)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통신은 KCP에 가담한 업체중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진위여부를 확인해

18) 미국정부와 민간의 출자에 의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200여개사의 기업과 조직으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

19) 이 보고서는 백악관 정책보좌관 매거지너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작업 결과로 민간주도, 정부규제 방지, 필요최소한의 정부 개입, 분권적이고 하의상달 형태의 인터넷 특성인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원칙제정 등 5가지 원칙과 다음과 같은 9가지 권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①무관세화 및 새로운 과세금지, ②전자지불제도의 채택, ③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일규범 마련, ④지적 재산권 보호, ⑤개인생활 보호, ⑥보안 보장, ⑦통신인프라와 정보기술에 대한 자유시장 접근, ⑧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 폐지, ⑨업계에 의한 자발적 기술 표준 개발 등이다. 한화경제연구소 역, “지구촌전자상거래기본계획”, 1997. 8. 참조.

20) JRI 등 미·일기업 64개사(미국 11개사)가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의 연계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함.

21) <http://www.ecrc.or.kr/>(1998), “전자 상거래 동향”.

주는 인증센터를, 쌍용정보통신과 다우기술 등 통신업체는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4개 카드사도 대금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전산업분야의 EDI 표준을 개발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 데이콤, 한국물류정보통신 등 EDI 사업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한국 CALS/EC협회·기술협회는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등을 담당하며, ELECTROPIA는 가전3사를 중심으로 전자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자상거래 실증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22)</sup>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각종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통합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998년 4월에 전자상거래법(안)시안을 발표한 뒤 다양한 논의를 거쳐 1998년 12월 현재 동법(안)<sup>23)</sup>을 국회에 상정 중이며, 정보통신부에서도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그 법적 효력의 규정을 통해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공인인증기관 등의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안)을 1998년 7월에 입법예고한 후 전자서명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 III. 電子商去來와 關聯한 立法例

22) 배용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국회현안분석자료, 98. 1.

<http://www.nanet.go.kr/nal/3/3-1-2/issu-153.htm>

23) <http://www.mocie.go.kr/> 참조

24)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제의 검토와 입법방향”,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 심포지엄자료, 1997. 4, p.80.

### 3.1 電子商去來와 關聯된 國際統一規則

#### 3.1.1 UNCID

거래 당사자간의 EDI 교환약정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1986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주관하여 “전송에 의한 무역자료교환에 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 UNCID)”이 제정되었다. 이는 EDI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국제통일규칙이다.

UNCID는 전자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 사이에 동의된 행위규범의 확립으로 전자무역자료교환(Electronic Trade Data Interchange : ETDI)의 사용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서로 다른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EDI교환약정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UNCID의 목적은 각국의 기존법률이 EDI내용을 수용하거나 EDI를 다루는 특별법의 제정이 제정될 때까지 다리역할을 하는데 그쳤다.<sup>24)</sup>

#### 3.1.2 INCOTERMS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각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무역조건의 해석원칙을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의 예방에 기여해 온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은 최근 무역부분에서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이 점차 보편화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1990년 동규칙을 개정시에 이를 반영하여 전통적인 서류로 된 무역서류 대신에 EDI메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고 있다. 즉, 인코텀즈의 공장인도조건(EXW)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였다는 공식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방식으로 통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인도의 증거서류 및 운송서류를 이에 상응하는 전자자료교환(EDI)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 조건의 A8, B8) 그러나 EDI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거래 당사자간에 EDI거래약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3.1.3 信用狀統一規則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에서는 무역결제면에서 변화하는 무역관습을 고려하여 1993년 제5차 개정시에 "자동화 시스템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는 물론 전자적 인증방법으로 서명된 서류도 은행이

수리"하도록 규정(제20조)<sup>25)</sup>하여 전자서류와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설은행이 인증된 전신(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으로 신용장 또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통지은행에 지시한 경우, 동 전신문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11조)

### 3.1.4 電子式 船荷證券에 관한 CMI 統一規則

INCOTERMS(1990)의 EDI의 도입에 따라 1990년 6월에 국제해사위원회(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 CMI)는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Rules for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을 채택하였다. 동규칙에 의하면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화물을 지배처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개인 코드(private code) 또는 "키"(key)와 함께 전자식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이러한 지배처분권은 송하인(통상은 화주)이 운송인에게 통지한 후 타이해관계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때 운송인은 원래의 키를 취소하고 화주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키를 발행한다.<sup>26)</sup> 또한 동규칙은 모든 당사자들이 전자메시지를 서면 및 서명과 법률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규칙에서는 청약이나 승낙의 구성요소, 시스템 실패 등과 같은 일부 중요

25)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서류도 원본서류로서 수리한다. I. 복사, 자동화 또는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하거나; II. 복사기에 의한 것; 다만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육필,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템프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계적 또는 전자적 인증방법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다.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20조 b항.

한 문제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sup>27)</sup>

### 3.1.5 UN海上貨物運送條約과 UN國際複合運送條約

UNCITRAL에 의하여 1978년에 성립된 UN해상화물운송조약(일명 함부르크규칙)은 전자 문서로 된 계약 및 전자서류의 증거력을 명문으로 인정(제1조 10항)하고 있으며, 전자적 선하증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제14조 3항) 또한 1980년에 위 함부르크규칙을 모델로 하여 UN국제복합운송조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Multimodal Transport, 1980)도 전자문서에 의한 운송서류와 복합운송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5조 3항)<sup>28)</sup>

### 3.1.6 UNCITRAL의 電子商去來 모델法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한 국제거래가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UNCITRAL 사무국이 1984년 "자동문서처리의 법적 측면(Legal aspec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8차 UNCITRAL에 제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UNCITRAL내에 "EDI와 관련 통신수단의

법적 측면에 관한 모델법안(Draft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의 작성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1995년 제 28차 UNCITRAL 작업반 회의에서 동모델법안이 마련되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29차 동위원회 회의에서 동모델법안을 심의한 결과, 1996년 6월 UNCITRAL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최종 채택하였다. 이 모델법은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에 의해 이전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에 적용되고, "기능상 동등 접근방법(functional equivalence approach)"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전자메시지가 종이 메시지와 동일한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게 했던 많은 장벽들을 제거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동모델법은 그 명칭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포괄적인 입법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중 EDI 및 그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데 불과하다.<sup>30)</sup>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에 기초한

- 26) 개인코드 또는 "키"는 전송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합의한 숫자 또는 문자를 조합시킨 암호번호이다(동규칙 제2조 f항). 또한 소지인에게는 각각 별개의 개인키가 부여되지만, 소지인은 개인키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동규칙 제8조 a항).
- 27) John Livermore and Krailek Euarjai, "Electronic Bills of Lading : A Progress Report",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28, No.1, January, 1997, p. 57.
- 28) 두 조약에서는 각각 선하증권과 복합운송서류상의 서명은 그것이 발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수기(handwriting), 모사서명(facsimile signature), 천공서명(perforated signature), 스템프(stamp), 날인(seal), 또는 여하한 기타 기계적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이 전자식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29) *ibid*, p. 56.
- 30) 남광, "UNCITRAL과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 월드」, 1997, 11, p.24.

통신문형식·정보자료보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모델법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적용범위와 개념정의 및 해석원칙, 데이터메시지의 법적 지위 및 효율적 데이터메시지의 교환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규율, 물품운송분야의 특별규정 등을 상당히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거래, 특히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동모델법을 계약조항으로 편입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3.2. 電子商去來와 관련된 各國의 立法例

#### 3.2.1 美國의 文書減縮法

미국의 문서감축법(Paper Reduction Act of 1995)은 연방기관<sup>31)</sup>이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서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연방기관이 가진 정보의 수집, 유지, 사용, 전파에 있어서의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제정되었으므로 그 자체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주된 규율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화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 비밀유지, 정보보안(Security), 정보공개(Disclosure), 정보의 공유(Sharing), 정보기술의 획득사용과 같은 점을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32)</sup>

#### 3.2.2 美國의 디지털 署名法

미국변호사협회(America Bar Association : ABA)의 정보안전위원회(Information Security Committee : ISC)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국제적 법률전문가 및 기술전문가들파의 협력 하에 약 4년의 기간에 걸쳐서 디지털서명법을 연구해왔으며, 동위원회는 1996년 8월 1일 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Digital Signature Guideline: 이하 ISC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최종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서명을 한 쌍의 열쇠를 쓰는 방법, 즉 디지털서명을 창설하는데 쓰이는 비밀키(private key)와 디지털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 verify하는 공개키(public key)에 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ISC 가이드라인은 초안형태로 널리 배포되었으며, 유타주가 처음으로 동가이드라인을 상당부분 참조하여 디지털서명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sup>33)</sup> 또한 독일의 디지털서명법 제1초안도 동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부제를 “인증기관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서 필요로 되는 디지털서명 및 인증기관에 관한 법률·제도적 검토 하에서 작성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ISC 가이드라인은 전문과 해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본문부분은 「제1장 정의(Definitions)」, 「제2장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제3장 인증기관(Certification

31) 단순한 연방정부기관 이외에 공기업,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임.

32) 이진우, “전자거래의 법적 검토”,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자료(<http://bora.dacom.co.kr/~kafi/seminar/4-2.htm>), 1996, 12.

33) IS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재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유타, 워싱턴 주 등에서 디지털 서명법(Digital Signature Law)이 제정된 상태이다.

Authorities)」, 「제4장 등록자(Subscriber)s」, 「제5장 디지털서명에 대한 신뢰(Relying on Digital Signatures)」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3.2.3 獨逸의 멀티미디어法

독일에서 지금까지의 멀티미디어사회의 발전에 대비하고 인터넷 등의 이용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앞으로 한층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소위 “멀티미디어법”이 제정되어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원격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 원격서비스에서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서명법이라는 3개의 법률의 제정과 형법, 질서위반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서의 반포에 관한 법, 저작권법, 가격표법 등 6개의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는 옴니버스법인데, 이 중 디지털서명법이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후의 경제거래의 법적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서명법은 디지털서명을 행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이 체계하에서 디지털서명이 확실하게 행해지고, 디지털서명의 위조, 디지털서명이 있는 디지털정보의 위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법에서는 디지털 서명에 대한 정의(제2조), 소관관청(제3조), 인증기관에 대한 면허(제4조), 증명서의 발행(제5조), 인증기관의 교시의무(제6조), 증명서의 내용(제7조), 증명의 정지(제8조), 문서화(제10조), 데이터의 보호(제12조), 당국의 감독(제13조), 디지털 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제14조) 등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이 법률에 의한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재판시 법관이 높은 증명능력을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디지털서명과 관련해서 증명법의 개정을 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 3.2.4 말레이지아의 디지털 署名法

1997년 말레이지아에서는 디지털 서명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디지털 서명 자체와 디지털 서명의 이용을 규율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동법은 7부 9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총칙으로 약칭과 용어정의를 행하고 있고, 제2부 인증기관의 관리인과 인증기관의 허가, 제3부 인증기관 허가의 요건, 제4부 허가된 인증기관과 가입자의 의무, 제5부 디지털 서명의 효력, 제6부 보존장소와 소인 스템프 서비스, 제7부 기타로 구성된다.<sup>34)</sup>

## 3.3 우리나라의 電子商去來關聯法規

### 3.3.1 電子商去來法(案)

전자상거래법(안)은 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으로서 1998년 4월 작성된 초안을 근거로 각도의 논의를 거쳐 총6장 39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여 1998년 12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sup>35)</sup>

34)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2, pp.422-426.

그 주요규정으로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제4조),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의무와 준수사항(제14조-제16조),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규정(제17조-제21조, 제33조), 전자상거래 촉진시책 추진(제22조-제27조), 전자상거래 촉진기반조성(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촉진(제3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동법(안)은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장소 및 시기를 명확히 규정(제8조)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제5조)하고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규정(제7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3.3.2 電子署名法(案)

전자서명법(안)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가 1998년 7월28일에 입법예고하고 1998년 12월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법률(안)로 1999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sup>36)</sup>

동법(안)은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률이 정하는 날인 또는 서명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명

의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서명 등의 법적 효력 부여(제3조, 제4조)함과 동시에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증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제6조)를 도입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실무준칙의 신고(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 휴·폐지절차(제12조), 업무중지명령 및 인정취소(제13조), 업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제20조-제23조)하고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인증기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4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타인의 전자서명키 도용행위 등의 금지규정, 인증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목적외 이용 및 누설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시의 처벌, 정부가 외국과 인증기관 및 인증서를 상호인증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에 관한 상호인증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동법(안)은 전자상거래법(안)과 함께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써 199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게 되면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시장 환경에 부합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35)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교환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그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며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6)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생성, 전송 또는 저장되는 자료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것이다.

### 3.3.3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총7장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1996년 12월 30일 최종 개정되었다.

이 법은 제4장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9조)을 담고 있는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자문서표준화계획의 수립 및 고시의무를 부여하고(제11조),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또는 승인 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제12조)하는 한편, 동전자문서는 무역관련법령 등이 정한 문서로 간주한다고 규정(제13조)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절차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를 상대방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때로 간주하고(제15조 제1항), 더불어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상대방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것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러나 그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

률의 규정이나 제9조에 의한 약정(Service Agreement)의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문서교환(EDI)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여타 입법에 있어서도 많은 준거를 제공하였지만 무역업무 분야에 한정된 특별법으로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각 해당분야 별로 별개의 특별법을 양산하는 발단을 제공하였다는 지적도 받는다.

### 3.3.4 電算網 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6년 5월 12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동법은 1995년 12월 6일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산망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을 하였으며, 1996년 12월30일 최종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37) 제17조의2 (전자문서의 효력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업무와 전산망을 관리하는 자(이하 "전산망관리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허가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규정은 전자문서의 정의(제2조 3호), 전자문서의 효력 등(제17조의 2)<sup>37)</sup>,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제17조의 3)<sup>38)</sup>, 전자문서의 내용의 추정과 전자문서의 보관(제17조의 4)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전산망사업과 관련된 많은 일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국가전산망 또는 공공전산망에 국한되어 사경제분야의 전자상거래를 포용하기에는 곤란하며 전산망의 개발보급, 관리,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다.

### 3.3.5 其他 個別分野에서의 電子商去來 關聯 特別法規

#### 1) 工業 및 에너지技術 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이 법은 1997년 12월 13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정의(제2조 3, 4), 전자상거래의 정의(제2조 5)<sup>39)</sup>, 전자문

서의 효력(제8조 제2항)<sup>40)</sup>, 안전조치강구의무 및 내용공개의 금지(제8조 제3항), 위조변조 등의 금지(제8조 제4항, 제5항),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제8조 제6항), 처벌법규(제22조 제1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전자상거래 일반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 2) 貨物流通促進法

화물유통촉진법은 1997. 12. 13. 최종 개정을 통해 물류의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합리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하였다.

동법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제2조 제11호) 및 전자서명(동조 제12호)의 정의, 물류표준화에 관한 계획수립(제3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류표준화위원회의 설치(제6조),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제48조 2)과 전자문서의 이용의무

38) 제17조의3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9) 제2조 제5항 "전자상거래"라 함은 공동의 표준을 사용하여 전자화한 상업적인 거래를 말한다

40) 제78조 제2항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41) 제48조의4 (전자문서등의 효력) ①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신청·신고 또는 등록 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 등을 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물류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서명날인으로 본다.

42) 제48조의5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 등을 한 전자문서는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등은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화(제48조 3 제1항) 및 전담사업자의 지정(제3항), 전자문서의 효력(제48조의 4)<sup>41)</sup>,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제48조의 5)<sup>42)</sup> 등의 주요 규정을 두고 있다.

### 3.3.6 其 他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1조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이외에도 관세법, 사무관리규정, 조세관련, 출입국관리, 지적관리, 주민등록, 차량 및 운전면허관리, 해운 및 항만업무관리, 상업등기 관리를 위한 개별적 조문이 각각의 법규에 산재되어 있다.<sup>43)</sup>

## IV. 電子商去來契約

### 4.1 概 觀

전자상거래의 사용증대는 문서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전통적 법률체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상관행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에 비해 법률체계는 다소 늦게 변화하며, 이 격차는 새로운 형태의 상관행에 대한 법적 효력의 부인을 비롯한 제도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다.<sup>44)</sup>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현상은 전자상거래를 주도한 선진국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법적으로 규율할 필

요가 없다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자상거래가 연혁적으로 특정분야의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계, 즉 민간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표준약정이나 이를 근거로 체결하는 개별 약정의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경제부분의 활성화는 국제적인 거래관계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된 표준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국제상거래관련기구가 중심이 되어 그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그러나 성문법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특정분야를 규율하거나 혹은 전자상거래 자체를 규율하기보다는 다른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상품을 건네주고 대금을 지불하던 종래의 거래와는 달리, 구매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상품의 구매와 결제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고, 판매자가 이를 접수하여 판매하려는 상품을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이는 종래의 거래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sup>45)</sup>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43) 이진우, 전 계논문(<http://bora.dacom.co.kr/~kafi/seminar/4-2.htm>).

44) Ian Walden and N. Savage, "The Legal Problem of Paperl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p.240

45) 전자상거래시에는 많은 과정이 디지털화(전자화)된 정보의 전달에 의해서 성립된다.

#### 4.2 契約의 成立時期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대개의 경우 채권관계의 발생)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그에 합치하는 승낙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상의 정의에 따르면 계약성립에 관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 자체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과 계약 성립은 낙성주의에 의하여 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컴퓨터에 의한 자동발주는 "의사표시"라고 보아 법적인 취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데이터의 도달시기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승낙의 시기 즉 계약성립의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사표시(전자상거래시는 주로 데이터가 됨)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학설에는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를 승낙의 발신과 도달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문제된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 전자상거래계약을 대화자간의 약정으로 보아 민법

제 111조 제1항<sup>46)</sup>의 원칙에 따를 수 있을 것인가이고 둘째는 전자상거래계약을 격지자간의 약정으로 보아 민법 제531조<sup>47)</sup>의 규정에 따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을 비롯한 각 단행법률에서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망에 의한 정보의 전달 체제는 도달·발신의 시간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 즉 전자 매체는 발신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전자데이터가 자신의 단말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신의 회사의 LAN 내에 있다면, 아직 발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송신 상대방과의 사이에 VAN이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때도 있을 수 있다.

사건으로는 민법 제531조에서 예외적 발신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거래의 신속 및 상업적 편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발송과 도달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자문에서의 전송속도가 사실상 동시적 인(Virtually Instantaneous) 점을 고려하거나, 향후 실시간(Real-time) 메시지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임을 고려하면 위의 어느 질문에 대하여도 도달주의가 타당할 것이다.<sup>48)</sup>

한편 우리나라의 개별 법규들은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는 그 발신인이 보낸 메시지가 수신인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46) 민법 제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7) 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8) EDI와 관련하여 미국변호사회의 보고서에서도 EDI 통신의 특징인 상호성(Mutuality), 신속성(Quickness), 신속한 도착확인기능(Prompt return of a functional acknowledgment)을 이유로 도달주의를 권고하고 있다.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의 경우도 도달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안)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동안 제8조 제1항, 제2항)<sup>49)</sup>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EDI와 관련하여서는 통상적으로 완벽한 실시간 메시지시스템이 아닌 점과 도착확인메시지(Acknowledgments)를 비롯한 메시지들의 저장 및 재전송(Store & Forward)에 수시간이 걸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역자동화법 제15조 제2항이나 여타 법률의 규정은 발신인의 메시지가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Service Provider)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입장은 예외적인 발신주의가 요구하는 거래의 신속 및 원활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Service Provider는 일종의 매개통신서비스사업자(Intermediary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라고 볼 것이고, 당사자간의 분쟁시 Service

Provider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에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간의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신인이 통신네트워크상에 메시지를 올려보낸 시점과 Service Provider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되기 전까지의 시점간의 위험을 발신인의 부담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안)에서는 송신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동법(안)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동안 제8조 제3항)

이상의 논의의 실익은 장차 실시간(Real-time) 메시지시스템의 보편화와 더불어 차츰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나, 그 동안은 결국 거래의 주변사정, 거래관행 및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먼저 발신·수신의 정의에 대해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분쟁의 신속, 정확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모델법에서는, 그 심의 초기 단계에서 도달주의를 명기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이 도달주의를 채용하고 있어서 이 원칙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유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발신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예 : 일

49) 제8조 (송신·수신 장소 및 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작성자를 대리하여 그 전자문서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특정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 수신한 것으로 본다. 1.전자문서가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등에 입력되었을 때 또는 지정한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2.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등에라도 입력된 때

50) 무역자동화촉진법에서는 도달주의 원칙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관세법에서는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통지 등이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후 통상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당해 통지 등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관세법 제242조 6)하고 있어 무역자동화법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도달시기가 관세법의 그것 보다 조금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이진우, 전계논문(<http://bora.dacom.co.kr/~kafi/seminar/4-2.htm>.).

본민법)에는 전자상거래 환경아래서 민법의 원칙을 개정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 4.3 契約의 成立場所

EDI제도의 연혁을 보면 대개 한 상업에 속하는 여러 기업간의 거래체결 또는 한 대기업과 계열기업 또는 부품공급기업간의 구매주문과 이를 기초로 한 공급계약체결 등이 주된 발생형태였다.<sup>51)</sup>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적 계약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또한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미리 합의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에 관하여 약정<sup>52)</sup>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하더라도 약정내용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준거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장소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는 통상 승낙의 효력발생지인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장소를 계약성립지로 본다.

모델법에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송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신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수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4항)<sup>53)</sup> 이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안)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송신·수신 장소를 각각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수 개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상거래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업

장 소재지로 하고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모델법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동안 제8조 제3항)

#### 4.4 表意字의 特定

전자상거래에서는 본인을 가장한 타인에 의해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행한 계약으로서 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모델법 제13조(Attribution of data messages)는 전자데이터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전자대리인에 의하여 전자데이터가 송신된 경우,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있어서는 그 전자데이터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며, 전자데이터가 작성자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이용한 경우, 제3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자데이터가 작성자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자가 사용하는 방법에 접근(ID 등의 도용)하여 전자데이터를 발송하고, 그 제3자로부터 수신자가 전자데이터를 수신한 경우 수신자는 전자데이터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당해 전자데이터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그 전자 데이터와 동시에 또는 상당한 시간 내에 통지를 받은 경우, 제3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51) Ian Walden and N. Savage, op. cit., p.239.

52) 이러한 약정으로는 유럽식의 교환약정(Interchange Agreement)과 미국식의 거래 당사자약정(Trading Partner Agreement) 등이 있고 무역자동화법 제9조가 정하는 약정도 이에 해당한다.

53) 정완용,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법과대학·경희법학연구소, 제32권, 제1호, 1997. 8, p.93.

관계를 이용하여 작성자가 사용하는 방법에 접근하여 고의로 전자데이터가 작성자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자데이터를 발송하고, 그 제3자로부터 수신자가전자데이터를 수신한 경우, 수신자가 약정된 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전자데이터를 작성자가 송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4)</sup>

이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안)에서는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당해 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 받은 경우 또는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전자대행수단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를 송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안 제10조)

한편 전자서명법(안)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및 타인의 전자서명생성키 도용행위 그리고 전자서명된 전자문서의 위작·변작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동안 제27조)을 두고 이의 위반시 처벌규정(동안 제33조의 1, 2, 3)을 두고 있다.

#### 4.5 意思表示의 瑕疵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착오<sup>55)</sup>,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의 무효·취소 등의 전통적인 계약관련법 규정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착오의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의 입력실수(표시행위의 착오)<sup>56)</sup> 등의 비교적 발생빈도가 높은 단순한 착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sup>57)</sup>

우리 민법 제109조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착오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단순한 착오임을 입증하는 것에 성공한 경우 민법 제109조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착오로 인한 취소로 구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신뢰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거래이므로 일방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타방당사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안)에서는 “수신확인통지가 없는 경우의 전자문서 효력에 대하여 명시함이 없이 작

54) 손경한, 전개논문, pp.430-431.

55)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만을 착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그 자체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행한 것을 후에 발견한 상태를 착오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호, 「민법총칙」, 서경대출판부, 1996, p.235.

56) 컴퓨터에 잘못 입력한 것을 타자기의 오타나 단순한 오기와 달리 다를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상용, “자동화된 의사표시와 시스템계약”, 사법연구, 제1집, 1992, p.52.

57) 자판조작의 실수, 자판의미의 오해, 데이터입력의 하자 등이 대표적이다.

성자가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했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약정한 경우로서, 소정기간 내에, 소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수신자로부터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시의 의사표시의 과정을 재차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의자의 중과실을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계약의 취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시 표의자의 착오를 사회통념상 중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의 확립이 중요하다.<sup>58)</sup>

#### 4.6 無能力者에 의하여締結된電子商去來契約

개인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계약, 특히 컴퓨터통신계약에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무능력자인 개인에 의해서 체결된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현행 민법은 무능력자의 계약에 관하여 매우 강한 보호를 주고 있으며,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를 위해서는 최고권·철회권·거절권 및 무능력자의 취소권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59)</sup> 그런데 현실적으로 컴퓨터통신계약은 아주 짧은 순간에 체결되어지는 신속한 계약이며, 무대면거래로서 상대방에 대

한 신뢰를 큰 전제로 행하여진다.<sup>60)</sup>

반면 실체에 있어서 컴퓨터통신계약체결에의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에 의한 계약의 체결은 상대방 측에서 계약체결자가 미성년자인지 무능력자인지지를 거의 구별할 수 없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무능력자와 체결한 기업측은 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업측의 상품정보 등의 게시를 청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비자측의 승낙으로 바로 계약이 체결되어버리므로 대량거래를 하는 기업측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특정한 확인제도가 요구될 것이며, 앞서 언급한 착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소의 제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예컨대 신용카드거래의 경우에는 카드번호 등에 미성년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식별번호를 넣음으로써 기업측에서 능력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개발이나 현재 거래하는 상대방이 성년적격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내에 계약을 할 사람들의 법률행위능력여부의 정보를 보관해두고 계약체결시에 이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하더라도

58) 손경한, 전계논문, p.431. 참조.

59) 전자상거래법(안)에서는 무능력자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0) 화상통신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확인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 V. 要約 및 結論

인터넷의 빠른 성장과 전자통신매체분야의 기술발달은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완화시켜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래가 가능해져 유통채널이 단축되는 등의 경영환경 변화가 야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활동과 무역면에 있어서도 시장의 세계화, 조달의 국제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전환, 24시간 판매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거래관습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법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문제에 대하여 현재 세계각국에서 입법에 향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스러운 상태라 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는 국경이 없는 가상공간상의 거래이므로, 각국에서 규제가 제각각이라면,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충분한 제도이더라도 전체로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UNCITRAL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 각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 규범인 모델법을 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관련법률의 제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이 정식으로 제정된 나라는 현재까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무역에 관한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확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 유통촉진법, 관세법 등 6-7개 법률에 이르고 있으나 상거래 발생 시점과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각 법규간에 서로 상이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98년 말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회에 상정중에 있고 개별법의 통합·정비와 아울러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정부와 이를 실제로 행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관련법(전자상거래법, 전자서명법)은 거래관행의 지속적 변화와 거래의 탄력성을 염두에 두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부 시행령이나 규칙의 제정에 있어서는 각종 관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사항을 하나로 묶고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해서는 상법상의 보상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당사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계약행위의 취소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전자상거래관련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운용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될 것이고 거래관행으로 미루어보아 규정만으로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과연 이 법이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

이다.

그러므로 거래당사자는 사전에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필요로 할 것이며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 계약시에 당사자간의 위험분담의 정도와 그 영역 그리고 계약의 효력 등을 분명히 명시하여 법의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조계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기업측에서는 전자상거래시의 의사 표시의 과정을 재차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의자의 증과실을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계약의 취소를 제한하고,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카드번호 등에 미성년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식별번호를 넣음으로써 기업측에서 능력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개발과 함께 현재 거래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성년에 한하여 거래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이 확실히 인지하였음을 확인가능하게 하는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에 정보통신망내에 계약을 할 사람들의 법률행위능력여부의 정보를 보관해두고 계약 체결시에 이를 통하여 확인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獻

- 김상용, “자동화된 의사표시와 시스템계약”, 「사법연구」, 제1집, 1992.  
남 광, “UNCITRAL과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 월드」, 1997, 11.

- 배용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국회현안분석자료, 98. 1. ([http://www.nanet.go.kr/nal/3/3-1-2/i\\_ssnu-153.htm](http://www.nanet.go.kr/nal/3/3-1-2/i_ssnu-153.htm))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문제”, 「무역상무 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2.  
심충건, “손에 잡히는 CALS”, 정보시대, 1996.  
이동근, “전자상거래의 국제동향과 정책방향”,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확산전략」,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자료, 1997, 10.  
이상호, 「민법총칙」, 서경대출판부, 1996.  
이진우, “전자거래의 법적 검토”, 한국정보법 학회 세미나자료 (<http://bora.dacom.co.kr/~kafi/seminar/4-2.htm>), 1996. 12.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외환은행조사(314호), 1996.  
전자신문, 1997. 6. 30.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제의 검토와 입법방향”,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 심포지엄자료, 1997. 4.  
\_\_\_\_\_,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경희법학연구소, 제32권, 제1호, 1997. 8.  
통산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 2.  
통산산업부, “전자상거래 세계동향과 우리의 대응”, 1997. 7.  
한국전산원, “CALS/EC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96.  
한주섭 · 이용근, “무역관습론”, 동성사, 1993.  
홍준형,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 EDI 및 전

- 자거래의 개념과 기능”,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연구」, 한국전산원, 1996.
- 한국경제신문, 1998. 7. 1..
- 한화경제연구소 역, “지구촌전자상거래기본 계획”, 1997 .8.
- <http://aerosti.snu.ac.kr/~cals/saengsan/c.htm>(1998), 시스템공학연구소 CALS연구 실.
- <http://user.chollian.net/~syndrome/sub3.html>(1998).
- <http://www.ecrc.or.kr/>(1998), 전자 상거래 동향.
- <http://www.mocie.go.kr/>(1998), 전자상거래 법(안)
- <http://www.nca.or.kr/>(1998), 국가정보화백서(1997).
- Ellen Brezniak, "Internet Commerce : Who For Art Thou ?", EC World, April, 1997.
- Ian Walden and N. Savage, "The Legal Problem of Paperl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 John Livermore and Krailek Euarjai, "Electronic Bills of Lading : A Progress Report",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28, No.1, January, 1997.
- Pushpendra Mohta, "The Internet : Where Businesses Do Business", EC World, September, 1997.
- Network Wizards (<http://www.nw.com/zone/WWW/top.html>)
- XIWT Cross-Industry Working Team, Electronic Commerce in the NII, 1995, <http://www.wixt.org/documents/ECommDoc/ECommPaper.html>

## A Study on the Conclusion of Electronic Commerce

Kee-Hee Lee\*

### Absract

Global electronic commerce, driven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omputer, premises to be an important engine for growth for the world economy in the 21st century. Electronic commerce offers considerable new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and citizen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by enhancing productivity across all sectors of our economies and encouraging trade in both goods and services.

Specially in relation to contract, electronic commerce requires a coherent, coordinated approach internationally on key issues such as a validity, a legality,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ensure the stabl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construct a predictable legal and commercial environment, suitable to the situation in Korea, for business conduct on the Internet and other electronic method.

Electronic commerce, which breaks down national boundaries and widens the gap between the place where services are performed and the place where they are consumed, requires a new paradigm when making an agree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

\* Lectur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